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Q&A 자료집 ^{3rd}

2022. 3.



한국연구재단

본 자료집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업관리규정(훈령, 관리
·운영 지침, 집행기준)과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목 차

| | |
|--------------------|----|
| I . 교육연구단(팀) 운영 | 01 |
| II . 교육연구단(팀) 참여인력 | 07 |
| III. 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17 |
| IV. 사업예산 | 27 |
| V. 대학원혁신 | 29 |



I 교육연구단(팀) 운영

1. 자체 운영규정

(1) 자체 운영규정 수립을 위한 작성 지침이나 안내서 배포 예정인가요?

-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대한 재단차원의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팀) 자체적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들 중 국제 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어떠한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관련 안내자료(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가 BK21 사업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상한선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나요?

- 장학금 상한액을 정하는 바는 없으나, 자체 운영규정 내 상한액 설정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교육연구단(팀)장 외 직급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BK21 사업에서는 교육연구단(팀)장 외 직급에 대한 별도 규정 및 자료제출 등 절차는 없으며,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연구 윤리

(1) (추가보완)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연구윤리 확립 관련하여 연구윤리과목 개설 항목은 학과(대학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인지요?

- 연구윤리과목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교과/비교과 과정 및 온/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모두 개설 가능하며, KIRD 및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와 1회성 특강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2021년도까지 미개설한 대학에서는 2022년 1학기까지 연구윤리과목 개설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개설 및 이수 여부 등은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향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연구윤리과목 개설 시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이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PASS/FAIL 등의 과목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이러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인지요?

- PASS/FAIL 형태의 과목도 인정 가능하며,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은 참여기간 내 최소 1회는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수증, 성적증명서 등)을 보관 증빙으로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BK21 사업 참여 이전 대학원 과정 내 연구윤리 과목을 이수하여 증빙 가능 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 참여대학원생이 이미 졸업하였거나, 수료생 신분이여서 연구윤리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나요?

- 연구윤리과목 개설 전 참여대학원생의 졸업 또는 수료생 신분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교육연구단(팀) 장의 확인서(자유양식)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수 여부는 향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개설

(1) 사업 수행 학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육연구단(팀) 홈페이지를 구축해도 되나요?

- 기존 학과 홈페이지 내 교육연구단(팀) 소개 관련 별도의 메뉴 템을 만들어 운영 가능합니다.

(2) 사업신청서 공개 시 [첨부]에 개인정보가 많은데 공개가 필수인가요?

- 사업 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교육연구단(팀) 홈페이지 개설 이후 사업신청서 탑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안내드리는 사항이므로, 교육연구단(팀) 자체적으로 참여인력 선정 시 개인정보동의 관련 서류를 받아놓으셨다면 해당 동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신청서 공개 시 사업비 집행계획의 경우 사업전담인력의 인건비도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공개가 되어야 하나요?

- 신청서 내 사업비 집행 계획은 비공개 처리하셔도 됩니다.

4. 평가 관련

(1) 사업 공고문('20.2.)의 "연차점검(컨설팅)"은 자체평가에 해당하나요?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연차점검(컨설팅)"은 자체평가와는 별개로 관리·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컨설팅 희망 및 필요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연차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교육연구단(팀) 컨설팅 추진 일정>

| 사업 유형 | 컨설팅 일정 | 비 고 |
|-----------|-----------------------------|----------------|
| 미래인재 양성사업 |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 * 2021년 10월 실시 |
| 혁신인재 양성사업 | 2021년*, 2023년, 2025년, 2026년 | * 2021년 10월 실시 |

(2) 교육연구단(팀) 자체평가 시기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관리 · 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교육연구단(팀)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실적 작성 기준일 등 세부방법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참고 : 1차년도 자체평가의 경우 '20.9.1.~21.8.31.(1년간)' 실적에 한하여 '21.9월에 실시하였음

(3) 교육연구단(팀) 자체평가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 구성 요건이 있나요?

-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및 자체평가는 교육연구단(팀)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교육연구단(팀) 판단하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외부 평가위원(기관)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대학 내 타 학과 교수도 외부 평가위원으로 간주합니다.

5. 실적 인정기준

(1) 중간평가 시 참여인력별 실적 인정기준 및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적 인정기준 및 산정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2년 하반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하여 평가가 시행되는 시점에 세부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1) 연구성과(실적) 인정기준 >

| 성과 구분 | 인정 기준 |
|-------|-----------------------------------------------------------------------------------------------------------------------------------------------------------------------------------------------------------------------------------------------------------------------------------------------------------------------------------------------------------------------------------------------------------------------------------------------|
| 논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참여교수</u> : 소속 대학명 기재 시 인정 ※ 동일 대학 내 타 학과명으로 소속이 표기된 경우도 대학명 확인 가능하면 인정- <u>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u> : BK21 사업 참여 학과(부)명(융합 전공일 경우 융합전공명) 또는 교육연구단(팀)명 기재 시 인정 ※ 단, 저널의 특수성으로 학과(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인 경우, 참여 대학명으로 명기된 경우에는 인정- <u>전체 참여인력</u> : 타 기관 병기도 인정(예, ○○대학교 ○○과, ○○기술연구소) <p>★ <u>오프라인(인쇄물)으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만 인정되며, 온라인으로만 게재되는 논문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u></p> |
| 특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명의(학교, 산단, 산업체 등) 대학명 기재 시 인정(참여교수명 기재) |
| 연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본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나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된(입금기준) 실적 인정 ※ 타 기관과 공동과제의 경우, 지분 확인 서 등을 통하여 증빙될 수 있을 경우 산정 가능 |

※ 해당 성과 인정 기준은 2020년도 선정평가 기준이며, 세부기준은 향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기준2) 참여인력별 실적(인정)기간 예시>

| 중간평가 기준 | | 총 실적 산정기간 | | |
|---------|-----|-------------------------|--|-----|
| 참여대학원생 | 미참여 | 참여 | | 미참여 |
| | | 전체 실적 인정 | | |
| 참여교수 | 미참여 | 참여 | | 미참여 |
| | | 참여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 | | |
| 신진연구인력 | 미참여 | 참여 | | 미참여 |
| | | 참여시점부터 실적 산정기간까지의 실적 인정 | | |

※ 실적 인정 세부기준은 향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타 사업 논문 실적과 중복되는 경우 기여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타 연구개발사업 성과로 제출한 실적을 BK21 사업에 중복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여율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사항

(1)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사업관리 · 운영 가이드북이 제공되나요?

- 설명회 및 실무자 워크숍, 컨설팅, QNA 자료집 발간 등으로 사업관리 · 운영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관련된 모든 자료는 4단계 BK21 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교육(KIRD)” 온라인 교육은 3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BK21 사업 참여인력의 참여기간 중 1회 수강하면 되나요?

- 3단계와 마찬가지로 참여기간 중 1회 수강, 최초 참여 학기 내 수강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위과정 변경 및 신분변동(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등)이 생겼더라도 이전에 수강한 경우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하여, 수료증을 보관 증빙으로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3)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실무자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학 및 교육연구단(팀)에서는 실무자 관리 차원에서 산학협력단 및 교육연구단(팀) 실무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등록·변경) 하시어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자 합니다.

(4) 사업비집행 신고센터를 BK21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신설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기존 운영 중인 학교 내부 신고센터 및 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BK21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 대학 내 센터 및 체계가 기존에 있다면 해당 센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5)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22년에 이행사항 점검 후 불이행시 탈락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이행사항”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혁신인재 양성사업 “이행사항”은 학생충원 여부, 융합전공의 경우 융합전공 신설 및 운영 여부, 교육연구단 구성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참여교수

(1)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년 등 발생 시 참여교수 변경을 해야 하나요?

- 교육연구단(팀)장 유지/교체 기준 및 참여교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교육연구단(팀) 장 | | 참여교수 | |
|---------------------------------|------------|---------------------------|-------|-------------------------|
| | 단장 유지 | 단장 교체 | 참여 가능 | 참여 불가 |
| 국내외 기관파견 | 1년 이내 | 가능 (대리체제必) | 가능 | ○ (단장승인必) |
| | 1년 초과 | 불가 | 필수 | - ○ |
| 국내 연구년 | 1년 이내 | 가능 (대학장승인必) | 가능 | ○ (단장승인必) |
| | 1년 초과 | 불가 | 필수 | ○ (단장승인必) |
| 국외체류 (연구년, 연구활동, 장기출장) | 6개월 이내 | 가능 (연구년인 경우 대학장승인必) | 가능 | ○ (연구년인 경우 단장승인必) |
| | 6개월~1년 | 가능 (대리체제必) | 가능 | ○ (단장승인必) |
| | 1년 초과 | 불가 | 필수 | ○ (단장승인必) |
| 휴직/이직/퇴직/사망/ 참여제한 | | 불가 | 필수 | - ○ |

※ 참고 : BK21사업팀-10410('21.03.08.),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연구단(팀)장 및 참여교수 사업 참여 기준 안내

(2) 4단계 BK21 사업 신청 시 “2020년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교수도 사업신청 시 학과(부) 전체교수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4단계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자에는 사업신청 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비참여 교수로 변경 불가능)”이라는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신규 임용된 교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대학에 최초로 임용된 교수를 의미합니다.

(3) 참여교수 변경 시 참여시작일 이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 참여교수 변경은 관리·운영 지침 제10조 및 “4단계 BK21 사업 참여 인력 관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안내서(‘21.3.26.)”에 따라 참여교수 참여 시작일 이전에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발령(임용) 예정자를 참여교수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발령(임용) 예정자인 경우, 해당 증빙자료(발령 예정 공문, 임용예정서)를 첨부하시어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추후 해당학과 소속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협동과정 또는 융합전공으로 겸임 참여 하는 경우 겸임발령 공문 추가 제출)를 추가 제출하셔야 최종 승인이 되며, 발령일을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BK21 사업 홈페이지-자료실,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관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안내서 및 관련 증빙자료 양식 배포

(5) 교육연구단(팀) 전체 참여교수 수를 변경해도 되나요?

- 교육연구단(팀)에서 참여교수를 추가하여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전체 참여교수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지침 제10조 2항에 따라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 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6) 참여교수 직급 변경 시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나요?

- 참여인력이 우선적으로 한국연구자정보(KRI) 상 직급을 변경하시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3. 신진연구인력

(1) 시간강의 규정의 경우 한 학기 6학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절학기와 정규학기 포함해서 한 학기 6학점 인가요?

-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시간강의 가능합니다.
(여름학기 : 1학기에 포함/겨울학기: 2학기에 포함) 더불어, 학점으로 환산되지 않는 시간강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점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2)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진연구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계약에 따라 대학의 보수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타 과제에 참여연구원 혹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면 참여율 계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훈령 제30조 8항에 따라 교육연구단(팀)장 또는 대학의 장이 타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BK21 사업에 전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확인서 구비 필수)하여 참여를 허가하는 경우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연구단(팀) 소속 대학 외 이중 소속 제한) 다만, BK21 사업 참여인력의 해당 타 과제 참여 및 인건비 수령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BK21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율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4) (추가보완) 전문연구요원인 신진연구인력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14조 5항에 따라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 연구요원 경우 임용 시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가 대학 내 연구소

소속이어야 하며, 해당 연구소와 교육연구단(팀) 간의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 체결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신진연구인력의 자교 박사학위 취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관리 · 운영 지침 제14조 2항에 따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일지라도 해당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소속되는 교육연구단(팀)의 연구분야와 상이할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자교 내 박사 취득 전공분야와 소속 교육연구단(팀)의 연구분야가 유사한 경우 자교 취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추가보완) 기존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박사님을 계약교수로 직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위 변경 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이 포함되나요?

-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위와 상관없이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참여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이 방학 때 2개월간 인턴으로 회사에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런 경우 2개월간 BK21 사업에 비참여로 변경하였다가 인턴 종료 후 다시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요?

- 참여대학원생 자격조건 미충족 시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하셔야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시점부터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재참여 가능합니다.

(2) 참여대학원생이 1년 정도 해외로 연수를 갑니다. 이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 교육연구단(팀) 교육과 연구에 전념 가능하며, 참여요건을 만족할 시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참여인력 서약서는 사업 최초 참여 시 1회 작성하고 출력본으로 보관 및 비치하는 것이 맞는지요?

- 참여인력 서약서는 사업 최초 참여 시 1회 작성하며,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침 개정('21.6.11)에 따라 '21.6.11.자(포함) 이후 참여한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서약서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개정된 서약서(국문, 영문 중 1부)의 서명본으로 다시 접수받아 보관(필수) 하여야 합니다.

(4) 참여대학원생 타 과제 참여 허가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 참여대학원생이 참여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연구단(팀)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교육연구단(팀)장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 구비 필요)

(5) (추가보완)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신 외국인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외국인 등록증(D-2 비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만료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2 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일 경우, 참여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비자 사본 등으로 전일제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 참고 : 4단계 BK21 사업 참여요건 검증 매뉴얼(공지사항 105번 게시물('21.2.23.))

(6) (추가보완) 전문연구요원인 대학원생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1항에 따라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인 경우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 신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타 연구소 및 타 산업체 소속 전문연구요원은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군 위탁생 재학생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군 위탁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조건(전일제)에 미충족하므로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 단순 참여만 가능하며, 참여대학원생 모수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8) 학·석사 연계과정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학부생에게도 장학금 등의 지급이 가능할까요?

-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칙 상 해당 학생이 ① 석사과정으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이 가능(관련 학칙, 학적부 등 증빙 구비 필수)하며, 참여대학원생 모수에 포함되고, 연구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학·석사 연계과정 중 ② 학사과정에 해당되는 학생은 단순 참여만 가능(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학위과정-“학사” 및 최종 학위-“기타”로 하여 등록 가능)하며, 참여대학원생 모수에서도 제외하여야 합니다.

(9) 사업 수행 중 참여대학원생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참여대학원생 수의 70%)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 수행 중 참여대학원생 수 변동이 생기더라도 70%를 적용하는 기준은 1학기의 경우 4월 1일, 2학기의 경우 10월 1일자 기준 학생 수의 70%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인원 수 산정 시 소수점은 버림)

(10) (추가보완) 장학금을 지원받는 지원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참여대학원생 참여 종료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및 “4단계 BK21 사업 참여요건 검증 매뉴얼 (공지사항 105번 게시물('21.2.23.))”에 따라 참여(지원)대학원생의 참여 종료 시(사업기간 중 참여 종료 포함)에는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구비하셔야 하며, 사업기간 중 참여 종료 시에는 종료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를 함께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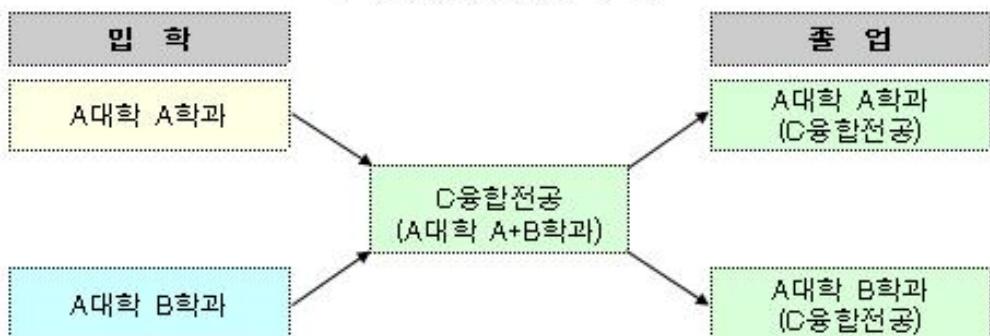
(11) 참여대학원생이 창업을 한 경우 참여할 수 있나요?

- 관리 · 운영 지침 제11조 4항에 따라 교육연구단(팀)의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창업을 한 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 지원은 불가하고 참여만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4대보험 미가입자)들에 한해서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면 BK21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상기 조건을 미충족 한다면 부득이하게 제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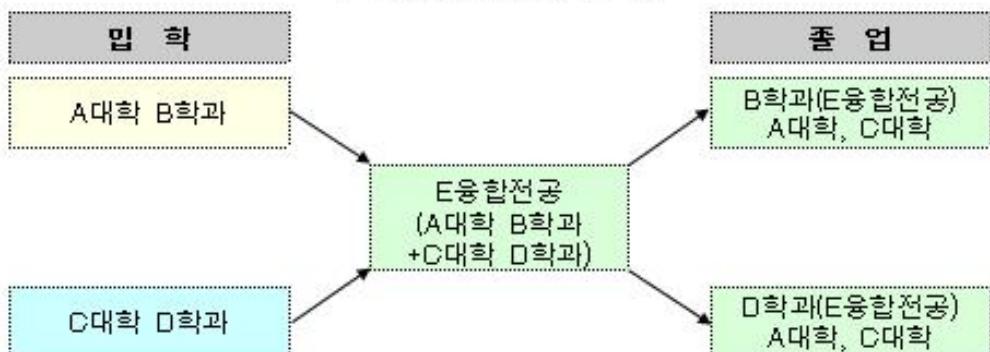
(12) 혁신인재양성사업의 융합전공으로 수행하는 교육연구단의 경우 구성 요건 등 기본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융합전공(대학 간 연합 포함)으로 수행하는 교육연구단의 경우 참여교수는 융합전공으로 겸임(전임)발령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 사업 참여 시에는 융합전공 소속임이 학적부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졸업 시에는 해당 융합전공을 이수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학내 융합전공 예시 >



< 대학간 융합전공 예시 >



(13)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미입국 참여대학원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에 한해(개인사유 등은 해당 없음) 정상적으로 학기 등록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를 구비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국내로 입국 시에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앞, 뒤 사본(D-2비자 여부 및 만료기한 확인)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 및 단순 해외 체류는 해당 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4) 신규 참여대학원생의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IRIS)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국가연구자번호를 부여받아 한국연구자 정보(KRI)에 가입 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미입국한 외국인 대학생 중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시스템의 자동입력 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하면, 연구자등록번호 임의값(예 : 9000001, 등 9로 시작되는 번호 부여)이 부여됩니다. (관련 : BK21사업팀-12009, '21.12.1.)

(15)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공동 지도교수인 경우, 둘 중 한명의 지도 교수만 사업에 참여하면 해당 학생도 참여 가능한가요?

- 대학원생의 공동 지도교수가 둘 다 BK21 사업 수행학과 소속인 경우 두 교수 모두 참여교수일 경우만 해당 대학원생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한명의 소속이 타학과, 나머지 한명의 소속이 BK21 수행학과일 경우에는 BK21 수행학과 소속 교수가 참여교수라면 해당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합니다.

(16) 참여대학원생이 방학 인턴쉽에 참여하게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유지될 수 있나요?

- 인턴쉽 기간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3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항만 인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제11조 4항을 확인하시어 예외사항 내용, 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소명하셔야 합니다.

(17) (추가보완) 참여대학원생의 사업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구비가 어려운 경우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한가요?

- 참여 종료에 따른 필요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는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 등으로 대체 불가하며, 참여 종료 시까지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적격여부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18)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유무 여부는 BK21 사업과 무관하고, 4대 보험자료에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 및 연구장학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9) 편입생의 경우, 이전의 대학의 동일한 재학 연한 및 입학일을 적용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 4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혹은 수료생)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산정 기간에서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은 제외). 편입 전의 해당 학위과정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등록 시 한글 이름 꼭 넣어야 하나요?

-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한글 이름 입력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21)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 2항('22.1.1.개정)에 따라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도 산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 BK21 사업은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인재양성사업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2) 산학협동과정생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기업체와 공동으로 개설한 석·박사과정의 비전일제 학생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교내 조교활동을 하여 급여를 받는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해도 되나요?

- 대학원생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직장가입자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할 경우, 집행기준 제29조 1항에 따라 대학원 혁신 지원비의 RA/TA 지원비와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5. 산학협력 전담인력

(1) 산학협력 전담인력으로 한 회사의 대표(CEO)를 채용해도 되나요?

- 관리 · 운영 지침 제14조의2 4항 및 5항에 따라 이중 소속 및 영리행위는 허용되지 않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II 교육연구단(팀) 사업비

1. 연구장학금

- (1)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이 개인사정으로 현재 본국에 돌아가서 연구장학금 지급은 정지한 상태입니다. 교육연구단(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1월~2월 중 참여대학원생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인데, 해당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나요? 참고로 이 학생은 2월 중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참여대학원생 자격요건을 만족한 상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도 가능합니다.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연구장학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대학원생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및 집행기준 제14조 6항에 따르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 집행 시에는 예산 내에서 집행하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수를 정해도 되는지요?
- 실 집행 시에도 미래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혁신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3)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이 인건비가 아닌 장학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생이 4주간 군사훈련을 가있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 군사훈련은 교육연구단 연구수행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구장학금 상한선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인센티브도 상한액 제한 없이 지급 가능한 것인지요?

-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또한 상한액은 없으나 합리적 평가 기준, 지급기준(상한액 포함)을 정하여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5) 1~2차년도에 걸쳐 6개월 이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최소 1학기 지원 기준에 충족되나요? 더불어, 6개월 미만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총 지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최소 1학기 지원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최소 1학기(6개월)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팀)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사유서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원대학원생(수료생)이 2월 졸업 후 POST-DOC 신분으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 할 예정이며, BK21 사업비 규모가 작아서 타 과제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장학금은 2월 졸업일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해야 하는지요?

- 졸업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 사업에 참여한다는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 증빙 시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 하지 않고, 2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대학원생이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요건(전일제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구장학금 지급은 어려우며, 2월 이후 타과제로 계약을 하시는 시점부터는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의하여 4단계 BK21 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7) 교내장학금 중 연구 또는 수업 지원으로 일정 시간 복무 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도 연구장학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교내장학금 또는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합니다.

(8) 지원대학원생이 학기 중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100% 환수해야 하나요?

- 휴학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휴학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장학금을 반납해야합니다.

(9) 융합전공으로 신청한 교육연구단의 학생들은 필수로 융합전공을 신청하고, 학적부 상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해야 하나요?

- 참여대학원생이 참여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장학금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10)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방학 중 해외 출국(본국 방문 등의 개인 사유)시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체류 시 해당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30일 미만의 경우에도 자체 운영규정에 외국인학생 방학, 휴가기간 장학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11) 해외장기연수 시 연구장학금 및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또, 연수기간 중 졸업하게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하나요?

- 집행기준 제18조 2항 3호에 따라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경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국제화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생의 연수경비는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충족하는 기간까지 지원 가능하며, 졸업한 학생의 경우 해당 월 장학금만 자체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1)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하한선(월 3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BK21 사업비로 하한선보다 낮게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 부족분을 교비로 지원해도 되는지요?

- BK21 사업비에서 월 하한액(300만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하한액을 초과하는 인건비만 교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타 과제와 고용계약 체결로 소속 대학 외 이중소속이 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2)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 경우 퇴직금이나, 4대 보험금 제외하고 실제 월 급여액이 276.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월 300만원)은 퇴직금 및 4대보험 법정부담금 중 개인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근로계약서 상 해당 금액(300만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월 급여액은 276.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에 강의료도 포함되나요?

- 강의료는 인건비(300만원 이상/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교육과정 개발비

(1) 교육과정 개발비에서 내부 구성원에게도 원고료 등 집행이 가능한가요?

- 정책과제 또는 용역(연구)과제화한 경우에 한해서만 내부 구성원에게 원고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교육과정 개발 시 외부전문가를 필수로 포함해야 하나요?

- 정책과제 및 용역(연구)과제화하여 교육과정 개발 시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단,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는 수당 지급은 필수사항이 아님)되어야 하며, 외부전문가가 과제에 참여했다는 증빙(교재원고, 자문내역 등)을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1) 4단계 처음 진입한 교육연구단(팀)이더라도 기자재나 환경관리비 등 연구실 초기세팅에 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없나요?
-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사업비(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2)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통계프로그램 등 구입이 가능한가요?
-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의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정밀 정산 시 해당 소프트웨어(계정 등)가 범용성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본 소프트웨어 구매 전 사용 목적 및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전 결재자료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일회성 강좌 등록비나 워크샵 등록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BK21 사업 관련 일회성 강좌 등록비나 워크샵 등록비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4)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로 집행 가능한 산업체와의 공동활동 경비 등은 어떤 의미인가요?
- 산업체와 협력한 취업지도 관련 행사 개최비, 산업체와 협력한 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프로그램 개발비, 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된 회의비 등 관련 경비를 뜻합니다.
- (5) 디자인/영상 분야 교육연구단(팀)의 경우 학회나 박람회 참가 외 기업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참가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과제 관련성 있는 국내 세미나의 경우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6) 학술대회의 온라인개최로 구두/포스터 구분이 어려운 학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 집행 시 구두 20건 이상을 확인할 수 없는데 지원 가능 한가요?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학회 등록비는 국제화경비, 충족 하지 못하는 학회 등록비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7) 논문 게재료 지원 시 BK21 사업 사사표기는 필수인가요?

- BK21 사업의 경우 논문 사사표기는 권고사항이고, BK21 사업비-논문 게재료 집행 시에는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수행학과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5. 국제화경비

(1) 해외석학초청 세미나를 온라인(화상)으로 진행할 경우 국제화경비에서 연사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 해외석학 연사료는 국제화경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2) 장기연수 관련 집행기준에 보면 대학여비규정에 따른 연수경비(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위한 실험을 진행할 시, 파견된 학교의 장비사용이나 분석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교육훈련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장기연수 시 공동연구를 위한 실험을 진행할 때 파견된 학교의 장비 사용이나 분석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장기연수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3)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주관으로 개최 할 예정입니다. BK21 사업비로 지원 가능한 예산 비목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회의장 대여료, 행사 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온라인 중계료 등 개최 경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시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감염병 발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시 온라인 개최에 대한 사유서, 온라인 개최 및 전문가 활용 계획 등이 포함된 사전 내부승인 결재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제한되고 있어 국외 연수 등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방문이 아닌 외국대학이나 MOOC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이나 또는 연수프로그램으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 기관과의 MOU체결 또는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경우라면 온라인 연수로도 집행 가능합니다.

(6)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학회등록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포스터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학회사이트에 포스터만 업로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 없이 포스터만 업로드 할 경우, 학회등록비를 단기연수 항목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 온라인 국제(학술)대회가 집행기준 제18조(국제화경비)제3항제3호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비는 국제화경비 중 단기연수에서 집행 가능하고, 충족하지 않는 경우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7)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자가격리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사업비로 참여대학원생에게 체재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제(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만 지원이 가능한지요?

-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을 수립한다면 국외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한 국제(학술)대회 기간에 대해서 체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8)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으로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라고 하셨는데, 꼭 “외국인”이여야만 하나요?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적이 아닌 해당 소속 기관으로 판단합니다.

(9)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 간의 인정기준이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은 동일합니다. 과학기술분야는 구두발표 20건 이상입니다.

6. 교육연구단 운영비

(1)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 가능하다면 교육연구단(팀) 내부인(교육연구단(팀)장, 참여교수)에게도 지급 할 수 있나요?

- 자체평가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은 자체 운영규정에 준용하여 집행하시되 교육연구단운영비에 학술활동지원비에서 집행가능하고 참여교수에 대한 수당성 경비는 성과급 비목에서만(1인 연 480만원 이내) 지급 가능합니다.

(2) 성과급의 경우 예산사용이 필수인가요?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연 480만원(1차년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 필수 사용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집행 가능하며, 규정에 마련되지 않았다면 마련 후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연 480만원 한도에서 지급가능(1차, 8차년도 240만원 이내)하나 정기적, 매 월 동일한 금액지급은 불가(자체 운영규정의 기여도 평가기준으로 차등지급 해야 함)합니다.

(3) 참여대학원생에게 교과서를 구매해서 나누어 주고 싶은데 사업비로 도서구입이 가능한가요?

- 문헌구입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문헌은 대학 내 소유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4단계 BK21 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학과로 초빙한 겸임교원(비전임, 시간 강사)을 대상으로 세미나 참여에 따른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 동일학과(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 전임 및 겸임교수, 신진연구인력(비전임, 시간강사),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 전문가활용비(강연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5) 교육연구단(팀) 소속학과의 학부생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하여 임금 지급 가능할 수 있나요?

- 소속학과 학부생을 BK행정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연구단운영비-인건비에서 임금 지급 가능합니다. 대학 자체 규정 상 아르바이트 단가표, 활용계획서류, 근로계약서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연구단(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비, 홍보 책자 제작비 등을 집행할 수 있나요?

- 교육연구단(팀)의 홍보비는 교육연구단운영비-일반수용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7. 기타

- (1) 1차년도 협약이 늦어져 카드 발급이 늦어졌습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는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사유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비 집행 계획 상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비목에서 논문 게재료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집행은 할 수 없나요?
- 논문 게재료 집행에 대해 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 중 사업과 관련한 논문 게재료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비목별 예산기준 내에서 변경하여 집행 하시면 됩니다.
- (3) 교육연구단(팀)장 외 참여인력 명의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카드 명의자 1명당 1개의 연구비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교육연구단(팀)장 외 참여인력(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도 연구비 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교육연구단(팀)장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신한 RNDCARD에서 발급받은 연구비카드는 '22.2.28.까지 사용 가능하며, 3차년도('22.3.1.~) 사업비부터 대학 자체적으로 발급받은 연구비 카드(혹은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여인력 외 교육연구단(팀)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행정 전담직원만 발급 가능)

1. 예산 산정

(1) 사업비가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20.2.)에 따라 확정된 연구비(미래인재양성 사업 2020년 기준, 혁신인재양성사업 2021년 기준)를 기준으로 매년 예산이 산출(이월금 등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년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 일부 예산조정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분야별(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팀)별 예산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2. 예산 편성

(1)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국제화경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나요?

- 국제화경비는 예산변경을 통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인건비, 교육 과정개발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단, 관리·운영 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용하셔야 합니다.

(2) 성과급을 증액하여 재편성할 수 있나요?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1조에 따라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3) 예산에서 교육연구단 운영비를 10%이내로 편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5,000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10%이내 혹은 5,000만원 이내 기준 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3. 예산 이월

- (1) 1차년도 사업비는 이월 15%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육연구단 운영비 또한 제한 없이 남은 운영비를 2차년도 교육연구단 운영비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3단계와 마찬가지로 이월액 중 10%이내만 교육연구단 운영비로 이월하고, 차액은 다른 비목으로 이월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차년도의 경우 이월의 상한액은 없으며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3단계와 동일하게 전년도 교육연구단 운영비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2차년도 총사업비(1차년도 이월액+발생이자+2차년도 사업비) 중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공통

(1) 대학원혁신 사업 중 신진연구인력을 위한 사업은 없나요?

- 대학원혁신을 위해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연구인력 교육 및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2) 교육연구단(팀) 소속 참여대학원생이 대학원 혁신 사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선정되었을 때, 교육연구단(팀)의 성과로도 인정 가능한가요?

- 대학원혁신 사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성과가 교육연구단(팀) 사업 목적과 부합하다면 성과로 인정됩니다.

(3) 대학원혁신 사업 연차별 예산운영계획서 작성 시 최초 신청서 대비 신규사업 또는 변경사업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수정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수정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습니다. 연차평가 실적 보고서 작성 시 기존대비 수정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대학원혁신 예산이 미지원 대학의 경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대학원혁신 미지원 대학은 연차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평가 시에는 평가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이월금은 어느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 대학에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한 이후 재단 승인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6) 대학원혁신 지원비는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요?

- 연차별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세부 방법은 연차별로 안내드리는 사업비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차평가를 통해 조정되는 대학원 혁신 지원비의 기준금액은 1차년도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인가요?

- 대학원혁신 지원비는 1차년도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된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8) 대학원혁신 사업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제제조치에 따라 사업비 삽감을 적용을 받나요?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 관리 매뉴얼(4차, '21.1.)"에 따라 교육부 감사결과 등에 따른 제제조치는 대학원혁신 지원사업에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 회계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관리 · 운영 지침 제54조에 따라, 대학원 혁신지원비 사용실적이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10) 대학원 혁신지원비 1차년도 분은 한도없이 이월할 수 있고 비목간 비율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비 편성 시 비목간 비율은 2차년도 사업비+1차년도 이월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비목간 비율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2차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만 비목간 비율을 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 2차년도 사업부터 대학원 혁신지원비 비목 간 편성 비율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1) 2월 말 기준 원인행위까지 하였으나 집행을 못하여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 예산에는 이미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는데 전년도 이월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3월 혹은 4월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비는 당해 사업기간 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한 잔액에 한해서 15% 이내 이월 하실 수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 잔액은 100% 이월 가능) 또한, 이월금은 당해년도 사업비와 합산하여 비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12) 대학원 혁신과 관련하여 채용된 인력은 대학원 본부 소속으로 채용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때, “대학원 본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대학원 본부 및 본부 내 하위부서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3) 대학원 혁신을 위해 여러 교육연구단(팀)이 연합하여 대학원 전체에 확산 가능한 공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계열별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집행 및 지출행위를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경우 대학원 본부 내 재배부는 가능하나, 단과대학에 예산을 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및 지출관리는 대학원 본부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4) 2월 말에 사용한 사업비의 증빙(법인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3월 중 지출처리를 할 수 있나요?

-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 사용의 경우 2월 말까지 사용한 경우 지출완료로 인정되며 과제기간 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출은 3월 10일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15) 대학원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생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학부생은 참여대상이 아니며, 지원 또한 불가합니다.

(16) 대학 전체 차원에서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대학원 혁신 지원비 회계 감사를 하는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대학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2. 인건비

(1) 신규 인력채용 시 대학원 조직 이외 다른 본부 행정부서 산하 소속이 가능한가요?

- 대학원 본부에 소속되어야 하며, 타 본부 또는 부설기관 등 소속은 불가합니다.

(2) 대학원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계약교수,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없나요? 계약교수의 경우 교육연구단(팀)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해도 되나요?

- 대학 자체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신임 전임교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교육연구단 비전임교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교육연구단(팀) 비전임교원(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3. 국제화경비

(1) 우수 해외 인재 유치에 따른 학생에 대한 펠로우십 장학금 지원이나 국제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RA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제화 경비,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중 어떤 비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우수 해외 인재 유치에 따른 경비는 국제화 경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장학금이나 국제 공동 연구 지원을 위한 RA에 대한 장학금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2)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대학 관련기관에서 사회공헌, 메이커톤, 창업 컨설팅 계약을 맺고, 다년간 협회비 또는 용역계약비 등을 국제화 경비비목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영비

(1) RA/TA 장학금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미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외 차이점이 있나요?

- RA/TA 지원비의 경우 연구활동 등 관련 업무 진행을 통해 지원받는 장학금이며,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은 우수인재, 사회적 배려자 등 특성에 맞는 대학원생에게 장학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대상으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대상은 참여대학원생(지원대학원생+미지원대학원생)이며 참여대학원생 외 신진연구인력 등은 펠로우십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대학원생 학업성공과 연구성과 향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활동비 (회의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등)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때 휴학생 및 수료생, 미참여 학과(부)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나요?

-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하며, 휴학생과 미참여 학과(부)에만 별도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원혁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회의비 및 재료비 등을 집행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환수 등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운영 시 재학생 이외에 휴학생, 수료생도 참여가 가능하나요?
또한 미선정학과 학생도 참여 할 수 있나요?

- 재학생(연구생 등록한 수료생 포함)이라면 대학원 혁신 목적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4단계 BK21 사업 미선정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상 대상은 특정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참여한 학생, 신진연구인력에 한정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교직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 대학원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프로그램 참여대상에 대해 포상이 가능합니다.

(6) 미참여 학과(부) 직접 지원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 미참여 학과(부)만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참여 학과(부) 소속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참여 학과만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집행 할 수 있나요? 개인 논문 작성 시 영문교정료 등과 같은 경비로 집행 할 수 없나요?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지급은 하실 수 없습니다.

(8)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지출증빙은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9) 대학원혁신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모전 선발팀에게 연구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구지원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해도 되나요?

-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법인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10) 상담 프로그램, 국제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테블릿 PC등의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 대학원혁신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높은 기자재 (테블릿, PC) 및 연구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집행은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며, 활용 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등록된 기자재의 추가 소요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의 후 집행 가능합니다.

(11) 참여대학원생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비 및 여비 등을 학생에게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지원 할 수 있나요?

- 사전에 해당 외부 교육기관과 대학원 혁신 목적으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관련 MOU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집행이 가능하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12) 타 과제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RA/TA를 지원이 가능하나요?

- 참여하고 있는 타 과제가 BK21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타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BK21 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는 사업이 아니면 대학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연구장학금과 중복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13) 대학원 혁신지원비 중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 운영비로 소프트웨어(통계프로그램)를 구입할 수 있나요?

- 대학원 혁신 추진 목적과 부합하여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통계프로그램)는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범용성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 구입 시에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에 기준 등록된 기자재와 중복 불가)

(14)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시 교육과정 개발 추진 시 교원(교수) 등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정책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 교육과정 개발 시 정책연구에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 수당 등 인센티브 성격의 비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료와 강의료는 대학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15) 지침 제48조에 따른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추진 시 발생하는 경비,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식비) 각종 행사 경비는 ‘기타사업운영비’ 비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지침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기타사업운영 경비는 교육 · 연구프로그램 개발 · 운영비 비목으로 집행 하시면 됩니다.

(16) 학사 및 경력관리 관련 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해 개발업체 용역을 비용을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 해당 시스템 구축/개발 건이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비용일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단, 예산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당해 사업연도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용역계약 기간이 당해연도 사업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7) 프로그램 운영 시 일반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생 및 특수대학원생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 대학원혁신 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일반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생 및 특수대학원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8) 재학생 대상으로 연구역량 관련 펠로우십을 지원하고자 하나, 본교 규정상 수료생의 경우 재학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BK21 규정에 따라 수료생도 지원해도 될까요?

-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훈령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절차 등을 학교 내규 및 대학원혁신 운영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9) 행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자료 조사 등의 목적으로 대학부생에게 단기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집행기준 제29조 관련 추진 시 필요한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비용은 해당비목에서 집행가능하며 인건비 단가표 및 활용계획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1) 대학원혁신을 위한 건물 증축시 설계용역비의 집행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대학은 대학원혁신 추진을 위해 대학원혁신 계획서에 A부서 신설 및 A부서 중심의 건물을 증축(개축)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건물 증축은 교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만, 설계용역비는 대학원혁신 지원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환경 개선 목적의 기존 건물 유지보수 관련 경비만 집행 가능합니다.
건물 증축을 위한 설계도 증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2) 상담실 등 운영을 위한 외부 공간 대여료는 집행 가능한가요?

- 교육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3)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관련하여 다음 예시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1) BK21 사업 참여학과 전용 대학원생 공간이 아닌 단과대학 공용 대학원생 강의실 환경개선 비용
 - 2) 단과대학 대학원생 전용공간이 아닌 단과대학 건물 및 공용시설 보수 비용
 - 3) 단과대학 내 대학원생 휴게공간 조성 비용
 - 4) 신진연구인력 연구실 환경개선 비용
- 대학원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4) 학생 공용연구공간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화상회의용 웹카메라 등을 환경개선비에서 구입 가능한지요?

- 대학원 혁신조성목적으로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구입한 기자재는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 대학에서 자율 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1)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관련하여, 장비 하나의 가격은 3,000만원 이하 이나 여러개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개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의 경우에만 전문기관의 심의대상입니다.

7. 기타

- (1)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을 위한 양식은 대학별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을 위한 양식은 대학 자체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교내 주요공간은 공간대여료를 받고 있는데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학교 내 공간 대여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 학교 내 공간대여료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 (3) 본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되는 경우, 학교는 부가세 면제기관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인데, 기관영수증만으로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사유서를 구비 시 기관영수증도 인정 가능합니다.

「추가보완」이 명시된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Q&A자료집(3rd Edition) 발간 시점부터 적용합니다.